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36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기웅 · 이종배 · 김재섭
최은석 · 김소희 · 윤재옥
최보운 · 서명옥 · 박성훈
이달희 · 주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포장된 식품을 수납·배송한 후 회수·세척하여 반복 사용하는 프레스백 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는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프레스백 등의 세척·소독·건조방법, 정기검사, 반복 오염 시 개선조치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공·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세척·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위생관리기준을 마련·재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신선식품 배

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예방하여 식품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및 그 관리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나.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에게 회수·세척·소독·건조·보관 및 재사용 과정의 위생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규모 이상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의 설정·재검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라. 물류센터·세척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표면검체 채취 근거를 명시함(안 제22조).

마. 위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사용중지·재세척·폐기 및 세척공정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근거를 명시함(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97조).

바. 검사·기록 의무 위반과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01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란 포장된 상태의 식품을 수납하여 소비자에게 운반하거나 배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방·상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회수·세척 또는 소독의 과정을 거쳐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부속되어 반복 사용하는 보냉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의4.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회수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장에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관리) ①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는 해당 용기가 위생적으로 회수·세척·소독·건조·보관·운반 및 재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수된 용기와 세척이 완료된 용기의 구분 보관
 2. 오염 · 파손 · 누수 여부의 확인 및 부적합 용기의 분리
 3. 세척제 및 소독제의 종류 · 농도 · 온도 · 접촉시간 등 세척 · 소독
공정의 관리
 4. 세척 후 건조 및 재오염 방지
 5. 세척 전후 위생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6. 세척 · 검사 및 개선조치에 관한 기록의 작성 · 보존
 7. 위생상 위해가 확인된 용기의 사용중지 · 재세척 또는 폐기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 ·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생검사 결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미생물 또는 오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용기의 사용을 중지하고 재세척 · 소독 ·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가 회수 · 세척 · 소독 · 건조 · 보관 또는 검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위생검사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출입 · 검사 · 수거 ·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제2항제6호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 제3항에 따른 위생검사의 주기·항목·방법 및 부적합 용기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위생검사의 시험방법, 위생지표 및 결과의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해요소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상태와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에게 실제 배송된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상태
2. 회수·세척 전후의 미생물 오염도 및 세척·소독·건조 공정의 유효성
3. 업체별 관리방식 및 반복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4. 지표미생물 및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 여부와 수준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9

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의 설정 또는 재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기준 개선 및 제도개선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사대상·방법·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판매소,”를 “판매소,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회수·세척·소독·건조·보관 또는 출고가 이루어지는 물류센터·세척시설 및”으로, “식품등”을 “식품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식품등의 무상 수거”를 “식품등 또는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표면검체 등 시료의 무상 수거·채취”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를 “영업 또는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관리에 관계되는 장부·서류 및 전자기록의”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회수형 식품배송용기에 대한 조치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관리자가 제9조의4를 위반하여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용기의 사용중지
2. 재세척 또는 소독
3. 회수 또는 폐기

4. 세척 · 소독 · 건조 공정의 개선

5. 추가 검사 및 그 결과의 제출

6. 그 밖에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1호 중 “단서 또는 제55조를”을 “단서, 제55조 또는 제72조의 2제2항을”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3을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작성 · 보존한 자

1의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 재세척 · 소독 또는 폐기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한 위탁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5조의3(제4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해요소 조사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위해요소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위해요소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관리기준 마련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제9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생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9조의4에 따른 위생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의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5의2. (현행과 같음) <u>5의3.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란 포장된 상태의 식품을 수납하여 소비자에게 운반하거나 배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가방 · 상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회수 · 세척 또는 소독의 과정을 거쳐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부속되어 반복 사용하는 보냉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u> <u>5의4.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란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공 · 회수하고 이를 재사용하는 자를 말한다.</u>
<u><신 설></u>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4(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관리) ① 회수형 식품배송
용기관리자는 해당 용기가 위
생적으로 회수·세척·소독·
건조·보관·운반 및 재사용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회수된 용기와 세척이 완료
된 용기의 구분 보관

2. 오염·파손·누수 여부의 확
인 및 부적합 용기의 분리

3. 세척제 및 소독제의 종류·
농도·온도·접촉시간 등 세
척·소독 공정의 관리

4. 세척 후 건조 및 재오염 방
지

5. 세척 전후 위생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6. 세척·검사 및 개선조치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7. 위생상 위해가 확인된 용기
의 사용중지·재세척 또는 폐
기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수형 식품배송
용기관리자는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수형 식품배송
용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
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
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검사 또
는 제3항에 따른 위생검사 결
과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
킬 우려가 있는 미생물 또는
오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용기의 사용을 중지
하고 재세척·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
가 회수·세척·소독·건조·
보관 또는 검사 업무를 제3자
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
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위생검
사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제
출 요구 및 출입·검사·수거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제2항제6호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 제3항에 따른 위생검사의 주기·항목·방법 및 부적합 용기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른 위생검사의 시험방법, 위생지표 및 결과의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3(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해요소 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상태와 위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에게 실제 배송된 회
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상
태

2. 회수·세척 전후의 미생물
오염도 및 세척·소독·건조
공정의 유효성

3. 업체별 관리방식 및 반복사
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4. 지표미생물 및 병원성 미생
물의 검출 여부와 수준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를 제9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의 설정 또는 재검토에 반영하
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기준 개선
및 제도개선 계획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사대상·방법·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 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 -----

-----판매소,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회수·세척·소독·건조·보관 또는
출고가 이루어지는 물류센터·세척시설 및-----

-----식품등,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 ④ (생략)
<신설>

나. -----
-----식품등
또는 회수형 식품배송용기
의 표면검체 등 시료의 무
상 수거·채취

다. 영업 또는 회수형 식품배송용기의 위생관리에 관계되는 장부·서류 및 전자기록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회수형 식품배송용기
에 대한 조치명령) 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가 제9조의
4를 위반하여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용기의 사용중지
2. 재세척 또는 소독
3. 회수 또는 폐기
4. 세척·소독·건조 공정의 개
선
5. 추가 검사 및 그 결과의 제

	출
	6. <u>그 밖에 위해를 제거하기 위</u>
	<u>하여 필요한 조치</u>
	② <u>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u>
	<u>회수형 식품배송용기관리자는</u>
	<u>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u>
	<u>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u>
	<u>·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u>
	<u>리령으로 정한다.</u>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7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4	1. -----
항, 제31조제1항·제3항, 제37	-----
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
제48조제2항·제10항, 제49조	-----
제1항 <u>단서 또는 제55조를 위</u>	-----단
반한 자	<u>서, 제55조 또는 제72조의2제</u>
	<u>2항을</u>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01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부과한다.	-----.

<u><신 설></u> 1. ~ 4.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1의3. (생 략) 2. ~ 8. (생 략) ③ ~ ⑤ (생 략)	1. 제9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재세척·소독 또는 폐기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4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한 위탁사업자 1의5.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